

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07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10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 집행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우, 상위법에 따른 이월 근거를 마련하고,
-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의 불일치 용어를 정리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하며,
- 상위법에서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예산 이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이월 관련 법령 변경(안 제4조)
-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관련 법령 변경(안 제5조)
- 물품 및 시설물 소유 및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취득관리 관련 법령 변경(안 제5조의2)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1

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7. 9. 15. ~ 2017. 9. 25. (20일간)

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< 볼임 1 >

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지원금은” 을 “지원금은 법 제16조 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라”로 한다. 제5조제1항제1호 중 “경리관” 을 “재무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분임경리관” 을 “분임재무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담당주사” 를 “담당팀장”으로 하고,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조의2(물품 및 시설물 취득·관리) ①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법 시행령”이라 한다.)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, 그 관리는 시장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 법 및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「안산시 물품관리 조례」 및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- ③ 시장은 관리·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과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시설물의 재산관리,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하며,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·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.

소관 실·과		녹색에너지과
임 안 자	실·과장	녹색에너지과장
	직위·성명	김 오 천
	담당·팀장	신재생에너지팀
	직위·성명	이 민 수
	담당자 성명·전화	탁 경 래 (행정 2926)

< 불임 2 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예산의 이월)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예산의 이월) ----- 지원금은 법 제16조 또는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라-----.</p>
<p>제5조(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) 특별회계 세입·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징수관, 경리관 : 담당국장 2. 분임징수관, 분임경리관 : 담당과장 3. 지출원, 수입금출납원 : 담당주사 	<p>제5조(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---- <u>재무관</u>----- 2.---- <u>분임재무관</u>----- 3.---- <u>담당팀장</u>
제5조의2 <신설>	<p>제5조의2(물품 및 시설물 취득관리) ① 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법 시행령"이라 한다.)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은 시의 소유로 하고, 그 관리는 시장이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물품과 시설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 법 및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「안산시 물품관리 조례」 및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 <p>③ 시장은 관리·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과 시설물 등의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 이관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지역주민 또는 단체에서는 시설물의 재산관리, 수익금 관리 등을 규정한 운영규칙을 마련해야 하며, 시장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·담보 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된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.</p>

현

행

개정안

[별지 제1호] <신설>

[별지 제1호]

물품검사서

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

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

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
같음.

년 월 일

검사원 직 성명 (인)

물품출납원 직 성명 (인)

입회자 직 성명 (인)

(주)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.